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 원
- 징수결정액 : 683천원
- 실제수납액 : 683천원
- 결손처분액 : 0 원
- 미 수 납 액 : 0 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전년도 100.0%)임.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A)-(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683	683	-	-	-	-	100.0
세외수입	-	683	683	-	-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683	683	-	-	-	-	100.0
기타수입	-	683	683	-	-	-	-	100.0
그외수입	-	683	683	-	-	-	-	100.0

※ 결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090,394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090,394천원
- 지출액 : 899,643천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190,751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7.5%(전년도 18.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0천원, 낙찰차액 2,619천원, 지출잔액 178,132천원임.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090,394	899,643	-	190,751	17.5
사업예산계	939,126	760,119	-	179,007	19.1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39,126	760,119	-	179,007	19.1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939,126	760,119	-	179,007	19.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28,648	18,554	-	10,094	35.2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13,492	647,553	-	165,939	20.4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96,986	94,012	-	2,974	3.1
일반예산계	151,268	139,524	-	11,744	7.8
기본경비	151,268	139,524	-	11,744	7.8

-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2년도말 민생사범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 취득 등 1,782천원
- 매각·폐기 등 26,008천원
- 당해연도말 66,245천원
- 총 수량 94개, 현재액은 66,245천원임.

〈 2022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 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 명	단 위	정 수	내용 연수	구분	2021 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2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리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대	149		수량	147	3	-	-	-	3	-	56	-	-	56	94
						금액	90,471	1,782	-	-	-	1,782	-	26,008	-	-	26,008	66,245
1	4010 1787	냉난방기	대	13	9	수량	13	-	-	-	-	-	-	-	-	-	-	13
						금액	7,721	-	-	-	-	-	-	-	-	-	-	-
2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13	6	수량	13	1	-	-	-	1	-	1	-	-	1	13
						금액	16,259	803	-	-	-	803	-	1,528	-	-	1,528	15,534
3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1	8	수량	1	-	-	-	-	-	-	-	-	-	-	1
						금액	1,415	-	-	-	-	-	-	-	-	-	-	1,415
4	4512 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대	122	9	수량	120	2	-	-	-	2	-	55	-	-	55	67
						금액	65,076	979	-	-	-	979	-	24,480	-	-	24,480	41,575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직원 전출입 등에 따라 수당 과오지급 등의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68만원을 수납하여 10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수당 반납 세외수입(68만원)은 2021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22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임.1)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A)-(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683	683	-	-	-	-	100.0
세외수입	-	683	683	-	-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683	683	-	-	-	-	100.0
기타수입	-	683	683	-	-	-	-	100.0
그외수입	-	683	683	-	-	-	-	100.0

※ 결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 | | |
|--------|----------|--------|
| 1) 과징금 | 2) 이행강제금 | 3) 부담금 |
| 4) 변상금 | 5) 과태료 | 6) 환수금 |
| | | 7) 범칙금 |

나.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 1) 재산매각 수입 | 2)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 3) 보조금 반환수입 |
| 4) 기타수입 | 5) 지난연도수입 | |

〈 2022년 수당 반납 세부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과세내역	건 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총 계			682,600	682,600	0	
224-06 그외수입	인사발령에 따른 급식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반납	1	474,850	474,850	0	
	지원근무자 기지급 위험수당 반납	1	207,750	207,750	0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상세사유
2022	224-06 그외수입	0	682,600	682,600	0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 반납 1건 474,850원과 지원근무자 기지급 위험수당 반납 1건 207,750원
2021	224-06 그외수입	0	10,104,180	10,104,180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 또는 수당 과오지급, 수령시 발생
2020	224-06 그외수입	0	950,420	950,420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 또는 수당 과오지급, 수령시 발생 연가보상비와 시전입에 따른 파견직급 보조비 반납

-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 동안 수당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이 있었는바,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당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반납 등 수당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가.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0억 9천 39만 4천원 중 8억 9천 9백 64만 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7.5%(1억9천 75만1천원)로 전년(18.3%) 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2.2%)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090,394	899,643	-	190,751	17.5
사업예산계	939,126	760,119	-	179,007	19.1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39,126	760,119	-	179,007	19.1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939,126	760,119	-	179,007	19.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28,648	18,554	-	10,094	35.2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13,492	647,553	-	165,939	20.4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96,986	94,012	-	2,974	3.1
일반예산계	151,268	139,524	-	11,744	7.8
기본경비	151,268	139,524	-	11,744	7.8

-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2천 8백 65만원을 편성하고, 1천 8백 55만원을 집행하여 35.2%의 불용률(불용액 1,009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28,648	18,554	10,094	35.2
사 무 관 리 비	9,648	9,571	77	0.8
국 외 업 무 여 비	10,000	0	10,000	100.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9,000	8,983	17	0.2

※ 불용사유

▶ 국외업무여비 : 코로나19에 따른 공식행사 외 국외공무출장 제한으로 전액 불용

-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1천만원)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년(1천5백만원)과 2021년(1천5백만원)에는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지 않고, 전액(1천만원)을 불용하였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15,000 (20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15,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10,000	0	10,000 (100%)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국외업무여비(1천만원)’을 불용하였는바,

-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생 사법경찰단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은 8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6억 4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20.4%의 불용률(불용액 1억6천6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이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는 민생사법 경찰단 자치구 파견 인원 감소(25명→21명)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여비 집행 감소에 따라 2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56.5%의 불용률(불용액 1억2천7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13,492	647,553	165,939	2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16	7,401	15	0.2
사무관리비	268,740	266,061	2,679	1.0
공공운영비	45,896	41,847	4,049	8.8
국내여비	224,280	97,525	126,755	5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18,000	0	0.0
특정업무경비	234,960	204,649	30,311	12.9
재료비	12,750	10,731	2,019	15.8
배상금	450	360	90	2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79	21	2.1

※ 불용사유

- ▶ 국내여비 : 자치구 인원감소(25명→21명), 민사단 내 코로나19 확진자발생(60명) 및 재택근무확대에 따른 관내현장활동 여비 집행 감소
- ▶ 배상금등 : 참고인 여비 집행잔액

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중 ‘국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342,000	168,540	173,460 (50.7%)	270,720	161,910	108,810 (40.2%)	224,280	97,525	126,755 (56.5%)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임.

〈 민생사법경찰단의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151,268	139,524	11,744	7.8
사 무 관 리 비	122,758	118,888	3,870	3.2
국 내 여 비	14,490	6,616	7,874	54.3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5,500	5,500	0	0.0
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	8,520	8,520	0	0.0

※ 불용사유

- ▶ 국내여비 : 자치구 인원감소(25명→21명), 민사단 내 코로나19 확진자발생(60명) 및 재택근무확대에 따른 관외현장활동 여비 집행 감소

○ 다만, 민생사법경찰단은 2022년 8월 26일 조직개편으로 동물보호 분야 수사 추가로 정원이 4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중 ‘국내여비’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불용률이 모두 높게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시	자치구	차이
2019년	97	66	31	-
2020년	93	67	26	△ 4
2021년	88	67	21	△ 5
2022년	91	★71	20	3
2023년 (4월 30일 기준)	101	75	26	10

★ 신규수사 분야(동물보호) 추가('22.9.8.)에 따른 조직개편('22.8.26.)으로 서울시 정원 4명 증가

※ '22.1.1.일자 서울시 현원 : 65명

〈 최근 3년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9,100	2,163	6,937 (76.2%)	9,520	7,749	1,771 (18.6%)	14,490	6,616	7,874 (54.3%)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국내여비’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를 인원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이 불가능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온 상황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 었음에도, 예산의 감액조정을 하지 않아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처리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보여짐.

- 다만,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 편성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출장이나 부당 수령 등으로 관련 예산을 소진시키는 것도 경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및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2022회계연도 사업별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은 크게 감소하였음(2021회계연도 14.2%(불용액 6천1백만원) → 2022회계연도 1.65%(불용액 6백6십만원)).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603,124	492,613	110,511 (18.3%)	428,605	367,669	60,936 (14.2%)	402,746	396,120	6,626 (1.65%)

- 다만, ‘사무관리비’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항목들이 있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책자인쇄(교재)’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40만원을 집행하여 240만원(218.3%)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종이류’,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 수리비’,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등을 초과 지출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편성액
합 계			402,746	396,120	6,626	1.65	436,053
특별사법 경찰 직무 역량 강화	사	계	9,648	9,571	77	0.8	10,116
		강사료	6,480	5,760	720	11.1	7,560
		원고료	300	216	84	28.0	300
		책자인쇄(교재)	1,068	3,399	△2,331	△218.3	2,256
		교육운영비	1,800	196	1,604	89.1	0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관 리	계	268,740	266,061	2,679	1.0	295,516
		기획단속 등 매식비	16,800	16,528	272	1.6	14,112
		차량 임차료	131,100	130,152	948	0.7	156,420
		피복비(근무복 3종)	39,160	38,749	411	1.0	36,960
		홍보비	15,000	14,940	60	0.4	20,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28,771	29	0.1	28,800
		압수물 폐기 운영	1,000	781	219	21.9	1,000
		수사팀 운영	30,380	31,879	△1,499	△4.9	30,224
		체력단련실 운영	1,500	1,375	125	8.3	3,000
		전문수사자문단 운영	5,000	2,886	2,114	42.3	5,000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	계	1,600	1,600	0	0.0	1,8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600	1,600	0	0.0	1,800
기본경비		계	122,758	118,888	3,870	3.2	128,621

기본사무용품종이류	1,429	2,015	△586	△41.0	1,512
소규모수선비	345	704	△359	△104.1	365
행정장비 수리비	1,764	3,705	△1,941	△110.0	1,764
도서구입비	500	334	166	33.2	500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99,360	87,497	11,863	11.9	105,12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24,633	△5,273	△27.2	19,360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 등 향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태의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민생사법경찰단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의 경우 2021년 목표(90%)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97.5%)을 달성하였음에도 2022년 목표를 2021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90%)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전례답습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회계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율	목표	90	90
		실적	97.5	95
		달성률(%)	108%	106%

- ※ 수사관 전문성 향상 및 인권수사 정착을 위한 맞춤형·체계적 직무교육 실시
 -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기본직무교육 2회, 분야별 핵심교육 6회 등)
 - 전문교육 기관 참석 : 특사경 법무연수원 과정(8회), 대검찰청 포렌식 교육(1회)
-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 | | |
|--------------------------|-------------|------------|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
|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

4. 성과보고서

전문위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